우체국용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신청서

담당자		책임자	

□ 고객 기본사항 (이메일 및 휴대폰 전화번호를 등록하셔야 전자금융 이용이 편리합니다.)

성명(법인명)		주민(사업자)번호	
이메일 주소	@ □없음	휴대폰번호	( ) – □없음

□ 서비스 신청내용

신 청 구 분	□ 신규 □ 해지 □ 변경
신 청 서 비 스	□개인인터넷뱅킹 □기업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VM, IC칩) □USIM현금카드
※ 스마트폰뱅킹 이용자는 인터넷뱅킹 가입만으로 추가 약정없이 스마트폰에서 프로그램 다운로드하여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자 ID	※인터넷뱅킹 약정 시 영문과 숫자를 혼합하여 6~13자리로 지정
보안매체	□ 보안카드(일반 / 점자) □ OTP(유료)

이체한도	인터넷뱅킹	1회 이체한도		1일 이체한도		폰뱅킹	1회 이체한도		1일 이체한도	
		원		원			원		원	
	보안등급	개인	법인	개인	법인	보안등급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등급(보안카드)	1천만원		5천만원		3등급(보안카드)	1천만원	1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2등급(입출금통지)	5천만원		2억5천만원		2등급(입출금통지)	2천만원	2천만원	1억원	1억원
	1등급(OTP,HSM,투채널)	1억원	10억원	5억원	50억원	1등급(OTP,HSM,투채널)	5천만원	1억원	2억5천만원	5억원

미성년자 단독가입 □ : 이체한도액(보안등급에 관계없음) – 1회 100만원, 1일 300만원	
인터넷뱅킹에서 출금계좌 등록 및 예금계좌 해지 여부	□ 동의 □ 동의안함
폰뱅킹에서 300만원 이상(1일 합계금액) 이체할 경우 휴대폰 SMS추가 인증	□ 동의 □ 동의안함

□ 서비스 이용계좌 등록/삭제

우체국(은행)명	계좌번호	이용신청 서비스	
		□ 출금계좌 □ 입금계좌 □ 간편조회	□ 등록 □ 삭제
		□ 출금계좌 □ 입금계좌 □ 간편조회	□ 등록 □ 삭제
		□ 출금계좌 □ 입금계좌 □ 간편조회	□ 등록 □ 삭제
※ 출금계좌는 1계좌 이상 등록(유지)하셔야 합니다. 입금계좌를 등록하시면 해당계좌에 한해 입금이 가능합니다.			

□ 기타서비스 신청

변경/등록 사고 신고	□ 서비스 재등록 □ 폰뱅킹 이체 비밀번호 재등록 □ 이체한도 변경 □ 기타사항 ( ) □ 보안매체(보안카드, OTP) 분실신고 □ 보안매체 분실신고 해제 □ 보안매체 재발급		
폰뱅킹 지정전화번호 등록(해제)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전화번호를 등록하시면 해당 전화로만 폰뱅킹 거래가 가능합니다		
보안계좌 등록 (해제) 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 – ( )
	보안계좌는 인터넷, 모바일, 폰뱅킹에서 조회, 이체 등의 거래가 불가합니다.		
입출금통지 서비스 (유료서비스)	계좌번호 ( ) 핸드폰번호 ( ) – ( ) – ( ) 계좌번호 ( ) 핸드폰번호 ( ) – ( ) – ( ) 기본정보와 상이할 경우만 기재		
	통지대상 (□ 입출금 □ 입금 □ 출금), □ 잔액표시 **통지금액** (□ 제한없음 □ 입금: 원이상 □ 출금: 원이상) **요금제** (□ 월 정액형 (계좌별/통지번호당 월 800원) □ 건별 부과형 (건당 20원 X 발생건수)		

□ 기업인터넷뱅킹 추가기재사항 (결재방법 및 사용자 OTP관리)

결재방법	□단독결재 □다단계결재	OTP 발급/수령	□총괄관리자 직접관리 □직원사용자 우체국방문
OTP카드 □등록 □삭제	사용자명 :	사용자ID :	
OTP카드 □등록 □삭제	사용자명 :	사용자ID :	
OTP카드 □등록 □삭제	사용자명 :	사용자ID :	

본인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을 승낙하고 위와 같이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청(변경/제신고)하며, 보안매체(보안카드 또는 OTP)를 신청한대로 정히 수령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보안매체(보안카드 또는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제3자에게 대여, 위탁, 양도하지 않을 것이며, 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감(서명)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2013. 7. 19. 개정)

대한민국 생활금융 EVER RICH

□ 전산인자란

거래코드	취급국기호	취급일자	취급시각	조작자번호	책임자번호	거래번호

□ 전자금융 신청 위임장

전자금융 가입을 위한 실명확인의 제반절차를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합니다.

대 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연락처	

위임자(예금주) (인감)

〈 첨부서류 〉

□ 본인(법인)의 실명확인증표 □ 본인(법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 □ 미성년자 본인명의의 기본증명서, 법정대리인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후견인 경우 법원판결문), 미성년자 전자금융 가입동의서

※해외거주자의 보안매체 재발급용 위임장은 본인 친필로 작성하여 영사관 확인을 받아 제출

□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동의서(금융거래 설정 등) 제출

※ 동의서는 별도로 우체국에서 제공하며, 우체국 금융거래를 위해 이미 동의서를 제출한 고객은 해당사항 없음

실명확인증표 사본

일부인

본인확인		확인방법 :

고 객 용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신청 확인서

□ 전산인자란

우체국금융고객센터 ☎1588-1900

□ 전자금융거래 이용 시 유의사항

1. 우체국에서 전자금융 거래 신청 후 공인인증서는 신청일 포함 5일 이내에 반드시 등록하셔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및 비밀번호 등 입력사항을 연속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서비스가 자동으로 일시 정지 됩니다. (단, 기업뱅킹은 12개월 이상 계좌이체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3. 각종 비밀번호, 인증서, 보안카드 등은 본인 이외의 그 누구에게도 노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셔야 하며,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우체국금융고객센터(1588-1900) 또는 인터넷 · 폰 · 스마트폰뱅킹으로 사고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공인인증서에 대한 문의 : 한국정보인증㈜ 고객만족센터 1577-8787
   - 이용가능시간 09:00 ~ 18:00(평일), 09:00 ~ 13:00(토요일)
5. 미성년자가 단독 가입한 경우
   - 이체한도액(보안등급에 관계없음) 1회 100만원, 1일 300만원임
   - 출금계좌는 최대 3계좌 개설 가능
   - 성년 도래 시 가까운 우체국에서 본인확인후 이체한도액 증액 가능

□ 전자금융 이용절차

인터넷뱅킹	1. 우체국 인터넷뱅킹(www.epostbank.kr)에 접속 2. 인증센터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복사
폰뱅킹	1. 1588-1900 전화 2. 안내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 코드를 선택
IC칩 모바일뱅킹	1. 모바일IC칩을 휴대폰에 장착 2. 휴대폰의 모바일뱅킹 아이콘을 눌러 프로그램 다운로드
VM 모바일뱅킹	1. 인터넷뱅킹에서 VM모바일뱅킹서비스 신청(PIN번호 입력 등) 2. 휴대폰에서 VM모바일뱅킹 프로그램 다운로드
USIM현금카드(UbiTouch)	1. 창구에서 모바일 USIM칩에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모바일에 프로그램 다운로드 2. 자동화기기(CD/ATM)을 이용하여 현금 입 · 출금 등을 이용
스마트폰뱅킹	1. 스마트폰에 "우체국스마트금융" 앱 다운로드 2. 스마트폰에서 직접 공인인증서를 발급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복사

□ 이용자 ID와 비밀번호 안내

1. 인터넷뱅킹
   - 이용자 ID : 최초 약정 시 등록하며 영문 · 숫자를 혼합하여 6~13자리로 구성(대 · 소문자 구분 안함)
   - 인증서 암호 : 공인인증서 발급 시 영문 · 숫자 ·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8~50자리로 구성(대 · 소문자 구분)
2. 폰뱅킹
   - 이체 비밀번호 : 폰뱅킹 신청 시 창구에서 핀패드에 입력한 숫자 6자리
3. IC칩 모바일뱅킹
   - 핀(PIN) 비밀번호 : IC칩 모바일뱅킹 신청 시 창구에서 핀패드에 입력한 숫자 6자리
4. 보안매체
   - 보안카드, OTP 비밀번호 : 보안카드의 뒷면 코드표 번호에 해당하는 숫자 4자리, OTP는 숫자 6자리

(2013. 7. 19. 개정)

대한민국 생활금융 EVER RICH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기본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우체국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우체국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 · 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우체국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TV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우체국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다. 우체국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8.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우체국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0.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우체국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1.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우체국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우체국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계좌송금"이라 함은 이용자가 현금자동입 · 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4.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라 함은 추심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우체국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5.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우체국이 창구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우체국과 이용자 사이에 다음 각호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추심이체(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금 · 출금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 · 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TV에 의한 거래
5. 직불카드단말기에 의한 거래
6.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체국과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조회(예금잔액, 예금 입 · 출금내역 등)
2. 단순히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거래
3.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 · 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우체국이 정하는 거래

②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우체국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우체국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③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5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또는 양도 · 담보 제공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7조(공인인증서 사용)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계좌에 대한 조회업무
2. ARS(자동응답서비스), 자동입 · 출금기, 지급용단말기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설치 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3.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4.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써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또는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
5.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경우
6. 기타 우체국이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경우

제8조(이용시간) ① 이용자는 우체국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시간은 우체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전 우체국창구에 게시하고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수수료) ① 우체국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른다.

② 수수료는 우체국의 수수료율 계산방법에 따르며, 우체국이 수수료 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우체국창구에 게시하고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일 1개월 전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린다.

제10조(이체한도) 이용자는 우체국이 정한 지정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1조(거래의 성립)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한다.
1.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우체국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출금계좌 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2.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우체국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 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3.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우체국이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 및 입금자금을 모두 확인한 때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의 경우는 우체국이 이용자의 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12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우체국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②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우체국이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우체국이 정한 시간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우체국은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④ 우체국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 없이 인출한다.

⑤ 대량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를 처리한다.

⑥ 타행계좌이체는 당일 중에 처리한다. 다만, 당일 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9조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⑦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한다.

⑧ 제7항의 경우 이체지정일이 우체국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거래를 처리한다.

제13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① 우체국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우체국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우체국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우체국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우체국창구에 서면으로 출금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당해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그에 따른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이용자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6.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우체국이 인정했을 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우편환송금 및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우체국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우체국이 정한 공인인증서 재발급 ·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⑤ 1회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 · 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1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이 지연될 수 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15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① 계좌이체, 추심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②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현금을 수령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③ 전자화폐, 전자채권 등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우체국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제16조(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제15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우체국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다.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경조금배달서비스 예약은 이체일 전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다.

③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우체국이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거래지시도 철회된다.

⑤ 이용자의 사망 · 한정치산선고 · 금치산선고나 해산 · 합병 · 파산은 그 지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우체국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우체국은 제15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린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주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경우 우체국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오류의 정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우체국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체국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우체국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사고 · 장애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우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우체국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우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우체국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우체국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 ① 우체국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체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우체국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4.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우체국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우체국은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제21조(거래기록 · 자료의 제공) ① 우체국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체국이 보존 · 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 ·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 · 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한다.

③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형태의 거래기록 · 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제공할 것을 우체국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우체국창구에 신청하여야 하며, 우체국은 신청 가능 창구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④ 우체국은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우체국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 · 자료(거래명세서 포함)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거래기록의 보존)
① 우체국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한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우체국이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5. 추심이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동의 내역
6.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7.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② 우체국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23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우체국은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우체국이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이용자가 제2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에 따라 제2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우체국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우체국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이외의 각종 통지를 우체국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우체국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우체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 방법

②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③ 기타 우체국이 정하는 사항

제26조(거래내용 녹음)
우체국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우체국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비밀보장의무)
① 우체국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 ·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우체국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우체국이 책임을 진다.

제28조(약관의 변경 등)
① 우체국은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 등으로 전자금융거래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우체국은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③ 우체국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우체국이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우체국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④ 우체국은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는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우체국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각 예금별 약관 및 관련규약을 적용한다.

제30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체국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는 등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우체국창구 또는 우체국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우체국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우체국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제20조 제1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우체국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 ·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7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6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은 인터넷뱅킹 (www.epostbank.kr) 게시 및 우체국 창구에 비치된 우체국예금거래 약관 참조〉

대한민국 생활금융 EVER RICH